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8298호, 2021.7.20. 제정, 2022.7.21. 시행)되고,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“보조인력”을 “지원인력”으로 변경하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8637호, 2021.12.28. 공포, 2022.6.29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하므로,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의2)
- 나. “보조인력”을 “지원인력”으로 수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)”을 “(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조인력”을 각각 “지원인력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자 또는”을 “사람 또는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교육과정)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, 공통 교육과정,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.	<삭 제>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유치원 교육과정: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, 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	
2. 공통 교육과정: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	
3. 선택 교육과정: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	

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
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
정

4. 기본 교육과정: 특수교육대상
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
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
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
을 대상으로 하고, 대상자의 능
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교과와 수준을 다르게
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
가. 국어, 사회, 수학, 과학, 실
과, 체육, 음악, 미술 및 교
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교과

나.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
및 직업에 관한 교과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
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
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
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
다.

제5조(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)

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
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

제5조(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)

① -----
----- 지원인력-----

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, 신
변처리, 급식, 교내외 활동, 등
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
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
할을 담당한다.

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
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
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
정된 자로 한다.

② 지원인력-----
----- 사람 또는 -----

----- 사람으로 -----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수교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563